

2014년도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 2014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,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2월 6일

기 상 청 장

※ 시험당일 10:1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,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1. 시험 일시 : 2014. 2. 15(토), 11:00~12:40(100분)

2. 시험장소

- 서울여의도중학교 : 수험번호 9가0001 ~ 9가0934번
- 서울윤중중학교 : 수험번호 9가0935 ~ 9가1901번
- 서울여의도여자고등학교 : 수험번호 9가1902~9가2643, 9나0001~9나0057, 9다0001~9다0040

3. 시험장소 오시는 길

- 서울여의도중학교 :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정도 소요
- 서울윤중중학교 : 지하철 5호선9호선 여의도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
- 서울여의도여자고등학교 :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

4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- 가. 시험당일 10: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(08:30 이후 시험실 개방)

- 나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**소지**하여야 합니다.
 ※ 학생증, 장애인등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- 다.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배탈, 수분 과다섭취 등 **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- 라.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마. 시험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 ※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
- 바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**대중교통수단을 이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. 시험장 내에서는 **흡연을 할 수 없으며**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아. 시험시간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자. **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**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**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 (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)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- 가. **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**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**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(사인펜에 “컴퓨터용”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**지참**하여야 합니다.
- 나. **시험시작 후**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, 답안지 **책형란 해당 책형(1개)**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다. 답안은 매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**표기**하여야 하며,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**정정**할 수 없습니다. (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)
 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

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 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라.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**응시자의 귀책사유**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답안지는 판독기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**반드시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**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, 점수산출은 판독기 판독결과에 따릅니다. 또한, 답안은 <보기>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정답표기 불인정, 가산점 미반영 등)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⊙ ⊗ ⊖ ⊕ ⊙ ⊙

- 특히, **연필·적색펜 등에 의한 예비마킹, 미세한 이중표기,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판독기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**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 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**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**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6호 위반행위**

-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·가점·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**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**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**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**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(표기)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※ 특히 아래사항 위반시 해당시험을 **무효처리** 하오니 **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- **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,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**
 - 책형 및 인적사항, 가산표기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

5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**2014. 3. 11(화), 15:00**에 기상청 홈페이지(www.kma.go.kr)에 게시합니다.

6. 가산특전 관련 안내

- 필기시험 가산특전(취업지원대상자, 자격증 소지자)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14. 2.14.)까지 해당 요건을 유효하게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(지)청 보훈과 문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확인하여, 시험 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필기시험장 오시는 길 안내

